

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·정지처분기준 (제79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제2호라목에 따른 사고로 인한 위반사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.

- 1)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,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- 2) 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.
- 3) 건설기계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인명피해의 수 및 재산피해의 금액을 2분의 1로 경감한다.
- 4) 건설기계와 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)의 사고의 경우 건설기계조종사가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- 5)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처분 받을 조종사 본인의 피해는 산정을 하지 않는다.

나. 면허효력정지처분의 일수를 계산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않는다.

다.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2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가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를 하며,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라. 1개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면허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합산한 면허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경우	법 제28조제1호	취소
나.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	법 제28조제2호	취소
다. 법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28조제3호	취소
라.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1) 인명피해 ① 고의로 인명피해(사망·중상·경상 등을	법 제28조제4호	취소

<p>말한다)를 입힌 경우</p> <p>② 과실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</p> <p>③ 삭제 <2018. 6. 28.></p> <p>④ 삭제 <2018. 6. 28.></p> <p>⑤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</p> <p>(1) 사망 1명마다</p> <p>(2) 중상 1명마다</p> <p>(3) 경상 1명마다</p> <p>2) 재산피해: 피해금액 50만원마다</p> <p>3)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</p>		<p>취소</p> <p>면허효력정지 45일</p> <p>면허효력정지 15일</p> <p>면허효력정지 5일</p> <p>면허효력정지 1일 (90일을 넘지 못함)</p> <p>면허효력정지 180일</p>
<p>마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</p>	<p>법 제28조제5호</p>	<p>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6조에 따라 조치</p>
<p>바.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</p>	<p>법 제28조제6호</p>	<p>취소</p>
<p>사.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</p> <p>1) 술에 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3퍼센트 이상 0.08퍼센트 미만)을 말한다. 이하 이 목에서 같다)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</p> <p>2)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</p> <p>3) 술에 만취한 상태(혈중알콜농도 0.08퍼센트 이상)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</p> <p>4)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면허효력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</p> <p>5) 약물(마약, 대마, 향정신성 의약품 및</p>	<p>법 제28조제7호</p>	<p>면허효력정지 60일</p> <p>취소</p> <p>취소</p> <p>취소</p> <p>취소</p>

「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)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		
아. 법 제29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	법 제28조제8호	취소
자. 법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	법 제28조제9호	취소